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2021년 03월 0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임종국 의원 외 35명
- 나. 제안일 : 2021년 02월 02일
- 다. 회부일 : 2021년 02월 09일
- 라. 상정일 :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1년 2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종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2011년 「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6·25전쟁남북 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‘실무위원회’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

- 본 조례 제13조(준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나, 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
- 다. 입법예고(2021. 2. 16. ~ 2. 23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폐지 조례안은 6·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¹⁾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{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(이하 「법」)}이 제정(2010. 3. 26)·시행(2010. 9. 27)됨에 따라 「법」 제4조의 「6·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」(이하 위원회)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‘실무위원회」 {「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」(이하 실무위원회)}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(‘11.7.30)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※ 6·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1952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‘6·25사변 피납치자 명부’에 따르면 8만 2,959명에 이르고 있으나, 북한에서는 여전히 납북자를 부인하고 있으며, 납북자 가족들은 과거 연좌제 적용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법은 관련 가족단체의 노력과 김무성 의원(89명 공동발의, 2008. 12. 10)과 박선영 의원(13명 공동발의, 2009. 1. 23)이 각각 발의하여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.

[6·25 납북관련 주요 명부]

연번	구분	작성주체	시기	인원	존재여부
1	서울시 피해자 명부	공보처 통계국	‘50	2,438명	○
2	6.25사변 피납치자 명부	공보처 통계국	‘52	82,959명	○
3	6.25사변 피납치자	내무부 치안국	‘52	(126,325명)	×
4	6.25사변 피납치자 명부	공보처 통계국	‘53	(84,532명)	×
5	6.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	내무부 치안국	‘54	17,940명	○
6	실향사민 등록자 명단	대한적십자사	‘56	7,034명	○
7	실향사민 명부	국방부	‘63	11,700명 -	1권○ 2권×

- 1) <용어의 정의>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
- 전시납북자 :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(군인제외)으로서 6·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
 - 6·25전쟁 기간 : 1950. 6. 25일부터 1953. 7.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
 - 전시납북자 가족 : 납북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

- 서울시 남북피해 신고접수는 시·군·구 및 재외공관에서 받고, 실무위원회는 60일내 사실조사 결과를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90일내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바, 「법」 제5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(법 제5조제2항제1호) 및 사실조사(법 제5조제2항제2호)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(2011.9 ~2016.3)하였음.

서울특별시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 개요

관련근거

- 「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위원회 구성 : 15명 이내

- (위원장) 서울특별시장, (부위원장) 행정1부시장
- (위원) 관련분야 전문가 6명 이내, 전시납북자 가족 3명 이내,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,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

기 능

-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-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임 기 : 2년(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※ 실무위원회 존속기간 : 위원회 활동기간

운영방법

- 남북피해 신고서류 및 사실조사 결과 검토, 의견서 작성
- 재적 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※ 서면심의시 : 재적 과반수의 찬성)

운영실적 : '11년 ~ '16년까지 총 36회 개최

서울시 6.25전쟁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중앙심의 결과

총 접수건수	납북자	납북자 비결정	판단불능
1,749	1,554	36	159

- 실무위원회는 조례제정 후 2016년까지 총 36회를 개최하여 1,749건의 남북피해가 접수된 가운데, 1,554건의 명예회복 실적을 달성하였음.
- 실무위원회 존속기간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무총리소속 위원회(「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」) 활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('17.6.12)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상쇄됨으로써 조례 폐지의 요건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음.

「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(약칭: 6·25남북자법)」 제4조(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)

① 6·25전쟁 남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남북자(이하 “남북자”라 한다)와 전시남북자가족(이하 “남북자가족”이라 한다)의 심사·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 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존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.

- 또한,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조례의 사문화를 방지하고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입법 동향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남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운영현황]

번호	자치단체	법규명	폐지여부
1	강원도	강원도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	존속
2	경기도	경기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3	경상남도	경상남도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4	경상북도	경상북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5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6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7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6.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 위원회 조례	존속
8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	존속
9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10	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'19.9.3. (폐지)
11	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12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"19.3.28 (폐지)
13	전라남도	전라남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('17.11.2) 폐지
14	전라북도	전라북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15	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조례	존속
16	충청남도	충청남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존속
17	충청북도	충청북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 무위원회 조례	존속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2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강대호, 권수정,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 김생환, 김수규, 김인호, 김재형, 김정태, 김춘례, 김평남, 김혜련, 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성흠제, 송도호, 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 유 용, 이광호, 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이호대, 장상기, 장인홍, 정진철, 최 선, 황규복, 황인구 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2011년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'실무위원회'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 본 조례 제13조(존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나, 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
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
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